## <u>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</u> <u>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u>

## 제 안 설 명

##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박칠성 의원입니다.

지난 5월 2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 스마트쉼터가 설치되고 있으나,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.

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켜, 그 설치와 관리·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